

# 내부통제규정

제정 : 2009. 2.16.

제1차 개정 : 2010. 7. 6.

제2차 개정 : 2018.12.21.

제3차 개정 : 2020. 3. 5.

제4차 개정 : 2024. 2.2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공사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감사업무 및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란 법령을 준수하고,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기준”이란 내부통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3. “준법감시”는 내부통제기준과 내규 등 제반 법규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활동을 말한다.
4.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 제2장 내부통제체계

제4조(내부통제조직 및 역할) ① 사장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②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사장을 보좌하여 내부통제업무를 기획·통할하며, 내부통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 및 지사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할하며, 리스크 관리, 회계, 정보보안, 감리, 준법감시, 윤리경영 등 부서장(이하 “분야별 내부통제 통할 부서장”)은 공사의 분야별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

④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①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장,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안전과 관련된 부서장 등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보고받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의결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 소집, 의사록 작성,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내부통제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내부통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준법감시담당본부장과 분야별 내부통제 통할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내부통제실무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은 준법감시담당 본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부서장 외에 추가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 부서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관한 지원

2.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관련 지원

3. 내부통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4. 통제부서 간 정보공유 및 업무조율

5. 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

6.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의결안건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회의 소집, 의사록 작성,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법감시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준법감시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업무의 기획·통할

2. 내부통제 이행현황 점검 및 보고

3. 법규준수 실태 점검 및 조사

- 4.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감시
- 5.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제3장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공사는 업무의 성격·절차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
3.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는 동일한 부서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에게 의하여 겸임되지 않을 것

**제12조(위험의 관리)** ① 기금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은 계량화 되고 지속적으로 인식·평가되어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시스템은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점검되어야 한다.

**제13조(정보관리 및 의사소통)** ① 공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모든 대외 접수·발송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정보 등 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문서기록·복사본·구두·파일·전자메일·팩스 등)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 ③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공사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선관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④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6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해상충 방지)** ① 임직원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공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결권의 행사)** ① 공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사고 예방)** 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인감 및 각종 도장은 전결권자의 결재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도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시 거래증빙과 상호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제3장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22조(하부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준법감시담당부서) 직제규정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법무실이 준법감시 담당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6 부터 시행한다.

## 부칙(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21부터 시행한다.

## 부칙(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5부터 시행한다.

## 부칙(4)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2. 29. 부터 시행한다.